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모자보건법 일부 개정(법률 제18612호, 2021. 12. 21.)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일부 조항의 문구를 개정하고, 국가유공자,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지자체 설치 산후조리원 이용과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 동 시설 이용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주체에 '시·도지사'를 추가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후조리원을 "공공산후조리원"으로 수정함(제17조의6 및 별표 2의2 개정)
- 나. 국가유공자,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유사 급여를 수령하거나, 유사한 사회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설치 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,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을 제고하고,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(별표 2의2 2호3목2) 단서 삭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모자보건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의견 조회 예정(2022. 4월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4. ~ 5월) 예정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전
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6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, “산후조리원의”를 “산후조리원(이하 “공공산후조리원”이라 한다)의”로 한다.

제17조의9 중 “제15조의20제1항”을 “제15조의21제1항”으로 한다.

[별표 2의2]의 제목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”를 “공공산후조리원의”로 한다.
같은 표 제1호 다목 중 “산후조리원의”를 “공공산후조리원의”로 하고, “보건복지부령”을 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3”으로 한다.

같은 표 제2호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, “산후조리원을”를 “공공산후조리원을”로 하고, 가목1)나) 및 다), 2)다, 나목 2)의 “산후조리원”을 “공공산후조리원”으로 한다.

같은 표 같은 호 다목1)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, “산후조리원”을 “공공산후조리원”으로 하며, 같은 목 2) “산후조리원”을 “공공산후조리원”으로 하고, 같은 목 2)가)부터 자)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같은 표 같은 호 라목 중 “산후조리원의”를 “공공산후조리원의”로 하고,

같은 호 마목 중 “산후조리원에”를 “공공산후조리원에”로 한다.

같은 표 제3호 중 “산후조리원”을 “공공산후조리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 하고, “산후조리원을”를 “공공산후조리원을”로 한다.

같은 호 나목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는 시·도지사”로 하고, “산후조리원의“ 및 ”산후조리원을“를 각각 ”공공산후조리원의“ 및 ”공공산후조리원을“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의6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)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<u>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</u>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설치 · 운영하는 <u>산후조리원의</u>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2와 같다.	제17조의6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) ----- ----- <u>시 · 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 <u>산후조리원(이하 “공공산후조리원”이라 한다)의</u> ----- ----- -----..
제17조의9(실태조사의 내용 · 방법) ① --- 제15조의 <u>20</u>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1~5호 생략)	제17조의9(실태조사의 내용 · 방법) ① 법 제15조의 <u>21</u> 제1항에 ----- ----- -----.
[별표 2의2] <u>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설치 ·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</u> 설치기준 등(제17조의 6 관련)	[별표 2의2] <u>공공산후조리원의</u> 설치기준 등(제17조의6 관련)
1. 설치기준 다. 그 밖에 <u>산후조리원의</u>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<u>보건복지부령</u> 으로 정하는 바에 따	1. 설치기준 다. ----- <u>공공산후조리원의</u> ----- ----- <u>모</u> <u>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별</u>

른다.

2. 운영기준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
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
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가. 감염 및 안전관리

1)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
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
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
수행하여야 한다.

나)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
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·
평가 및 개선활동

다)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
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
요령에 관한 교육·훈련을
매년 1회 이상 실시

2)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
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
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
여야 한다.

다)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
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
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

표3-----

-----..

2. 운영기준

시·도지사 -----
-----공공
산후조리원-----
-----.

가. -----

1) -----

-----.

나) 공공산후조리원 -----

다) 공공산후조리원 -----

2) -----

-----..

다) 공공산후조리원 -----

교육·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

나. 모자동실 운영 등

2) 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,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.

다.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

1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2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,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

나. -----

2) 공공산후조리원 -----

-----..

다. -----

1) 시·도지사 -----

---공공산후조리원-----

-----.

2) -----

-----공공산후조리원-----

-----.

(단서 삭제)

라.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조례·규칙의 제정, 관할 보건소·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마. 실태조사 및 평가

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3.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

가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나.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

라. -----

----- 공
공산후조리원의 -----

-----..

마. 실태조사 및 평가

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3. 공공산후조리원-----

가. 시·도지사 -----

-----공공산후조리원을-----

-----.

나. ----- 시·도
지사는 시·도지사 또는 -----

-----공공
산후조리원의-----

준을 위반하여 <u>산후조리원</u>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	-----<u>공공산후조리원</u>----- ----- -----.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97